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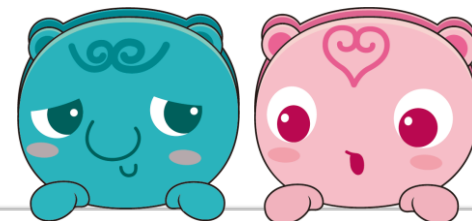
h·well

국민건강보험



요양기준실

목 차



1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

주요 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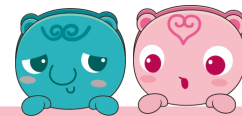
3

다빈도 질의사례

4

질의 및 응답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 안내사항

해당 교육 자료는 행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최종 고시 및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공포되는 고시 및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공포 고시 및 세부사항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홈페이지 게시 예정

※ 교육 동영상 자료 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종사자마당/직무교육 자료실 ('20년 12월말)

고시 및 세부사항 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 · 자료실/법령자료실 ('20년 12월말)

◆ 보험료율: 10.25% → **11.52%**

◆ 수가 인상률 : **평균 1.37%**

[단위 : %]

평균	노인요양 시설	공동생활 가정	주 · 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1.37	1.28	1.32	1.29	1.30	1.49	1.31	1.15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020년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021년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 방문요양 (1.49% 인상)

[단위 : 원]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4,750	22,640	30,370	38,340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43,570	48,170	52,400	56,320



◆ 방문목욕 (1.31% 인상)

[단위 : 원]

차량이용 [차량 내]	차량이용 [가정 내]	차량 미 이용
75,450	68,030	42,480

◆ 방문간호 (1.15% 인상)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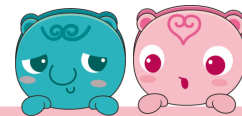
30분 미만	30분 이상 ~ 60분 미만	60분 이상
36,530	45,810	55,120



◆ 주 · 야간보호 (1.29% 인상)

(단위 : 원)

구분	3~6시간	6~8시간	8~10시간	10~12시간	12시간이상
1등급	35,480	47,570	59,160	65,180	69,890
2등급	32,850	44,060	54,810	60,380	64,750
3등급	30,330	40,670	50,600	55,780	59,810
4등급	28,940	39,290	49,220	54,370	58,430
5등급	27,560	37,890	47,820	52,990	57,040
인지지원등급	27,560	37,890	47,820	47,820	47,820



◆ 단기보호 (1.30%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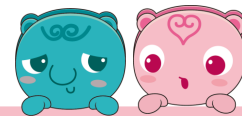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8,070	53,780	49,680	48,360	47,050

◆ 시설급여 (1.28~1.32% 인상)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노인요양시설 (1.28% 인상)	71,900	66,710	61,52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2% 인상)	63,050	58,510	53,930



◆ 주 ·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1.29%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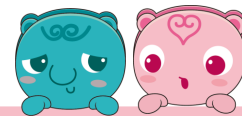
[단위 : 원]

구분	3~6시간	6~8시간	8~10시간	10~12시간	12시간이상
2등급	41,320	55,420	68,950	75,960	81,430
3등급	38,140	51,150	63,640	70,160	75,250
4등급	36,400	49,420	61,910	68,390	73,490
5등급	34,660	47,660	60,150	66,650	71,750
인지지원등급	34,660	47,660	60,150	60,150	60,150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공동생활가정

[단위 : 원]

구분	2등급		3~5등급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1.28% 인상]	가형	나형	가형	나형
	82,280	74,050	75,870	68,27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2% 인상]	72,520		66,870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4~2.8% 인상)

(단위 : 원)

구 분		의료기관	보건기관
의사소견서	일반	38,490	24,120
	치매의사소견서	54,110	43,600
방문간호지시서	수급자가 병원 방문	20,470	5,460
	의사가 수급자 방문	64,540	11,780

◆ 계약의사 진찰비용 (건강보험 의원급 수가와 연동)

(단위 : 원)

초진 비용	재진 비용
16,480	11,780

주요 개정사항



2021년도 고시 개정



가산 현실화

인건비 보존을 위한
가산금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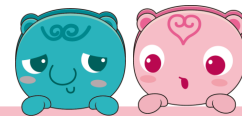
지출 효율화

필요 이상의
가산제도 정비



◆ 주요 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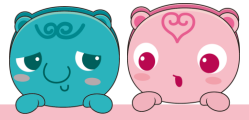
- 주·야간보호 이용자 월 한도액 추가 가산 축소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가산 제도 단계적 폐지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제도 개선
-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예외기준 강화
-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의 가산규정 명확화
-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 도입
- 인력추가배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제도 개선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적용 산정기준 명확화



◆ 인건비 지출 비율 변경

[단위 : %]

구 분	장기요양요원	'20년 인건비 지출비율	'21년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0.4	60.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4.9	65.0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1	48.3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8.3	58.5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5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2	49.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59.3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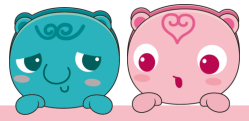
◆ 주·야간보호 이용자 월 한도액 추가가산 축소 [고시 제13조]

- [현행]
 - [일반]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50%범위 내 추가 산정
 - [치매]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70%범위 내 추가 산정
- [개정]
 - [일반]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범위 내 추가 산정
 - [치매]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50%범위 내 추가 산정

◆ 의사소견서 정의 추가 [고시 제17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일반 소견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의사소견서 정의 추가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이하 “의사소견서” 라 한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제도 단계적 폐지 [고시 제19조]

① 프로그램관리자 가산

‘21.1월부터 폐지

- [개편취지]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반영하고 있음
- [현행]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 가산
- [개정]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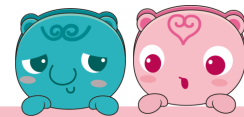


동일하게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금도 폐지** [고시 제32조]

②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

‘22.1월부터 폐지

- [개편취지] 급여제공 한도[2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이 일반 방문요양과 동일하게 적용[3시간]
- [현행] 제17조제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20분이상 제공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 가산
- [개정] ‘21년은 교육이수 기회비용으로 가산금 지급, ‘22년 가산금 폐지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제도 개선 [고시 제20조]

현 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급여비용의 30% 가산

개 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가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급여비용의 50% 가산

※ 유급휴일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 연장 근로의 개념인 18시 이후 22시 이전 서비스 제공 가산 폐지

- [현행]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제공 시 급여비용의 20% 가산
- [개정] <삭 제>



◆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산정 예외기준 강화 [고시 제23조]

- 가족인 요양보호사 1일 90분, 월 20일 초과 산정 조건
- [현행]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 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
- [개정]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21.1.1.이후 등급 갱신 또는 변경, 최초 등급판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

◆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의 가산규정 명확화 [고시 제36조의3]

-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 제공 시 **급여비용의 50% 가산 지급** 명시
- 동일가정 2명의 수급자에게 제공시 **가산금 1인 적용**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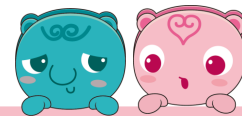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2명 x (기본수가80% + 가산금 전액)	(2명 x 기본수가80%) + 가산금 1명
266,830원	200,240원



◆ 장기간 단기보호 이용 시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 도입 [고시 제67조]

- [도입배경] '18년 전 개설 단기보호 기관의 급여일수 특례 유효기간 만기 도래
 - ※ 특례 종료 시 급여기간 대폭 단축 (연 210일 → 연 144일)
- [개선방향] 단기보호 수급자별 급여비용 산정일수에 따라 **감산 패널티 적용**
 - 수급자별 월 15일, 6개월 이용일수 보장
 - ※ '18년 1.1.이후 개설기관(9일)에서 수급자별 산정일수는 제외
 -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는 급여비용 감산제 적용을 위한 산정일수에서 제외

급여 이용일수	~ 90일	91일 ~ 150일	151일 ~ 210일
감산율	미감산	5% 감산	15% 감산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개선 [고시 제55조, 제56조]

- 모든 직종별 인력추가배치 가산 점수 0.2점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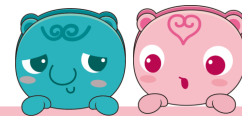
가산점수	현 행	개 정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1점	1.2점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1.2점	1.4점
조리원	1점	1.2점

-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기관에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

※ 가산점수 인정범위 초과하여 인력을 배치한 노인요양시설

기관 규모	가산점수 인정한도	추가 배치 인원	추가 인정 점수
입소자 50인 이상 70인 미만 시설	8.8점	요양보호사 5명 이상	1.2점
입소자 70인 이상 80인 미만 시설	10.0점	요양보호사 6명 이상	1.2점
입소자 80인 이상 90인 미만 시설	11.2점		
입소자 90인 이상 120인 미만 시설	13.6점	요양보호사 7명	1.2점
		요양보호사 8명 이상	2.4점
입소자 120인 이상 시설	14.8점	요양보호사 8명	1.2점
		요양보호사 9명 이상	2.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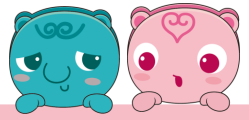
-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점수 **최대1점 추가인정** (급식위탁제외)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제도 개선 [고시 제58조]

- **2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가산 점수 **0.2점 상향**
 - 1번째, 3번째, 4번째 배치 가산 점수는 현행 유지

사회복지사 등 배치 인원	현 행		개 정	
	가산점수	누계	가산점수	누계
1명 (수급자 15 ~ 30인)	1.8점	1.8점	1.8점	1.8점
2명 (수급자 30 ~ 60인)	1.2점	3.0점	1.4점	3.2점
3명 (수급자 60 ~ 90인)	1.2점	4.2점	1.2점	4.4점
4명 (수급자 90인 이상)	1.2점	5.4점	1.2점	5.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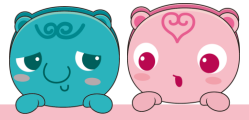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적용 산정기준 명확화 [고시 제67조]

- 근무형태가 **겸직인 종사자**가 급여유형별 최소근무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급여유형에서는 **퇴사특례 적용 불가**

고시 제67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제2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관에서 퇴사하지 아니하고, 직종만 변경하여 근무한 날
 2. 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특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무한 날
 3. **근무형태가 겸직으로 등록된 종사자가 해당 급여유형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설)**



◆ 교통비용 적용기준 명확화 [세부사항 제8조]

- [현행] 장기요양기관의 교통비를 보전하는 의미이나 서로 다른 적용기간을 둠.

원거리교통비용

장기요양기관이 신청을 한 날 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

[신청일 전 소급불가]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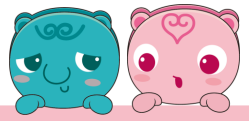
장기요양기관이 이동서비스를 시작한 날 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

[신청일 전 소급가능]

- [개정] 원거리 교통비용과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적용 시작일 일원화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적용 시작일을 ‘신청일’ 로 변경



◆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기준 강화 [세부사항 제12조]

- [특례 취지] 밤 12시를 포함하는 교대근무 형태로 인해 해당월 말일 야간근무로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 [개선방향] 교대근무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특례 인정 가능한 **직종 명시**

세부사항 제12조

- ② 고시제51조제1항과 관련하여 종사자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없이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야간근무를 포함한 1일 3교대,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2. **특정요일에 휴무하는 종사자**



◆ 치매전문교육 집합교육 외 온라인 과정 추가 [세부사항 제22조2]

-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과정 신설에 따른 **교육시간 삽입** 및 **교육이수시간 명확화**
※ 치매전문교육 온라인 과정 2020년 12월 1일 신설

세부사항 제22조의2

- ① 고시 제77조에 따라 치매전문교육과정 구성 및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 과정(기본과목+방문요양과목): 60시간. **온라인 교육 시에는 33차시 및 실습시험 7시간**
 2. 시설 과정(기본과목+시설과목): 60시간. **온라인 교육 시에는 33차시 및 실습시험 7시간**
 3. 프로그램관리자 과정(기본과목+방문요양 또는 시설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목): 73시간.
온라인 교육 시에는 38차시 및 실습·시험 11시간
 4. 치매전문교육 과목에 대한 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기본과목 : 40시간
 - 나.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13시간
 - 다. 방문요양과목 : 20시간
 - 라. 시설과목 : 20시간
 5.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과목에 대한 차시 및 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기본과목 : 23차시 및 실습 3시간**
 - 나.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5차시 및 실습·시험 4시간**
 - 다. **방문요양과목 : 10차시 및 실습·시험 4시간**
 - 라. **시설과목 : 10차시 및 실습·시험 4시간**

다빈도

Q & A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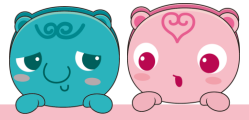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보다 더 이용 가능한 기준이
달라졌나요?

A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인정기준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1~5등급의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이상,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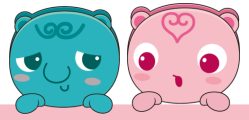
Q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불가한가요?

A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프로그램관리자 가산(6천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문요양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5,760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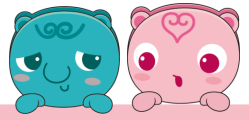
Q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라 다음날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부여 되었습니다.
일요일(어린이날)과 월요일(대체공휴일)의 가산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관공서의 공휴일인 어린이날 당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되어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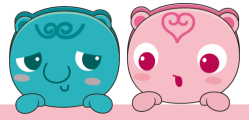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문제행동(4항목)이 있으며, ‘질병 및 증상’ 이 치매로 표시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할 경우, 1일 90분이상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인정조사표 상의 치매질병 표기가 아닌 의사소견서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여부에 따라 1일 90분이상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개정내용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고시 시행 이후 등급갱신·변경 및 최초 등급판정을 받는 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전에 등급을 받아 1일 90분이상 이용한 수급자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산정 가능합니다.



Q

방문요양기관으로 수급자가 80명이며 사회복지사를 4명 배치하였습니다.

‘21년 1월에 모든 수급자를 방문하여 상담업무를 완료하였다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점수는 몇 점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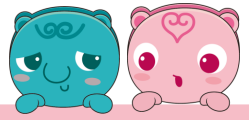
A

사회복지사 가산점수 4.4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배치 사회복지사(1.8점) + 2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1.4점) +
3번째 배치 사회복지사(1.2점)

사회복지사 등의 가산인정 인원수는 수급자 규모에 따라 최대 인정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어 4명을 배치하더라도 최대 3명에 한해서만 가산 인정점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21년 1월부터는 2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0.2점의 가산점수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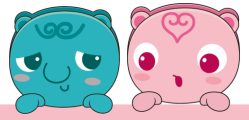
Q

'18년 전 개설한 기관(15일 가능)을 이용하다가 '18년 이후 개설 기관(9일 가능)을 이용한 경우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를 위한 급여 이용 일수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A

'18년 이후 개설기관에서 급여비용으로 산정한 일수는 단기보호 급여비용 감산제를 위한 급여 산정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년 전 개설기관의 수급자별 산정일수만 산정하여 91~150일 경우 5% 감산, 151~210일 경우 15% 감산하게 됩니다.

아울러, ① '18년 전 개설 기관에 입소 후 퇴소, ② '18년 이후 개설기관 입소 후 퇴소, ③ 최종 '18년 전 개설 기관 재입소한 경우에는
① 기관 입소하여 산정한 일수 + ③ 기관 입소하여 산정한 일수에 따라
급여비용 감산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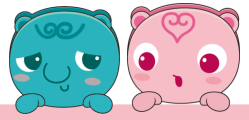


Q

노인요양시설에 일반실 입소자 50명과 치매전담실(가형) 입소자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추가 가산(1.2점)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기관이 규모별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범위 8.8점을 초과한 경우, 실별로 요양보호사 추가 산정한 인원수를 더하여 5명이상 된 경우에 8.8점+1.2점을 더하여 최대 10점의 범위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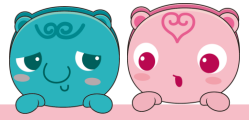


Q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동서비스비용 적용기간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1년 1월 5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를 시작한 후 신청은 1월 10일 하였다면 이동서비스는 '21년 1월 10일(신청을 한 날)부터 적용되며, 1월 5일부터 이동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이동서비스비용 적용 시작일이 신청을 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1월 5일부터 이동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Q 모든 직원이 월 15일 이상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인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모든 직원은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며,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 없이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야간 근무를 포함하여 1일 3교대, 1일 2교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한해 예외적용이 가능하고,

일부 직원이 주중 특정 요일 휴무로 인하여 해당 월의 근무가능일수가 적어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 근무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당 직원에 한해서만 15일 이상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인정합니다.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

